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0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989 취득세(자동차)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9. 8. 21.
판 결 선 고	2019. 10.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자동차) 2,469,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21. 장애등급 1급인 원고의 아버지 망 B(이하 'B'이라 한다)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04

원고의 공동명의로 C [redacted] 승용차(배기량 1,995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위 등록 당시 [redacted] 구 D아파트, E호(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에 B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2018. 3. 20. [redacted] 구 F아파트, G호(이하 '제2주소지'라 한다)로 전출신고를 하여 B과 세대분리가 되었다(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8. 3. 21. 제1주소지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여 B과 세대를 합가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면제된 취득세 2,469,09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착오로 제2주소지로 전출신고를 하였다가 실수를 깨닫고 제1주소지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실제로는 당시 B과 세대가 분리된 적이 없는바, 이는 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04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해 주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본문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서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하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두3299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04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가 이루어진 이상 실제로 원고와 A 사이에 세대분리가 이루어졌는지를 불문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착오로 전출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용

판사 이학승

판사 권주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04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구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04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끝.